

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 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0991/8963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KODEX China H 증권상장지수 투자신탁 [주식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형[주식] 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09. 10. 09 - 2010. 10. 08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신한금융투자, 대우증권, 유진투자증권, SK증권, 삼성증권,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, 골드만삭스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09. 12. 01	제 20 조(기준 가격의 계산 및 공시) 제 41 조(투자 신탁분배금 의 지급)	⑤ 2. 제 23 조 및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설정 · 환매요청 접수의 제 한에 대한 공고 업무 ④집합투자업자가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분배함에 있어 해당 투자신탁분배금이 투자신탁분배금의지급 기준일의 이 투자신탁이 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, 이익분배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배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이익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23 조제 1 항제 3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, 이익금이 “零”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.	⑤ 2.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설정 · 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④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“零”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
2010. 07. 13	제 2 조(집합 투자업자 및	이 투자신탁은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	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

안진회계법인	1년	220만원	서면계약	-	-	-	-	-
--------	----	-------	------	---	---	---	---	---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
- 부합함

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적정함

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
- 공정함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적정함

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
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
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
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
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
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
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